# 기관 홈페이지 관리 지침

### 제 1 장 총 칙

- 제1조 (목적) 본 지침은 기관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성화하여 원활한 정보제 공 및 공유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 (기관 홈페이지의 범위) 본 지침에서 정의하는 기관 홈페이지의 범위는 정보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서버로부터 제공되는 웹빌더 및 CMS 솔루션 기반의 아래에 열거된 홈페이지를 총칭하며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홈페이지는 범위에서 제외된다.
  - ① 입시 홈페이지
  - ② 대학원 홈페이지
  - ③ 각 단과대 및 학부(과) 홈페이지
  - ④ 각 부속기관 홈페이지
  - ⑤ 각 부설기관 홈페이지

#### 제3조 (기관 홈페이지 관리)

- ① 각 기관 홈페이지의 컨텐츠 관리 책임은 각 기관에 있다.
- ② 각 홈페이지의 관리 책임자는 각 기관의 장이며 책임자는 홈페이지 운영자를 선임할 수 있다.
- ③ 홈페이지 관리 책임자는 홈페이지의 관리와 홍보의 책임자로서 해당 홈페이지가 해당 기관의 정보제공의 중심역할을 감당하게 하며, 홈페이지 운영자를 관리 감독한다.
- ④ 홈페이지 운영자는 관리자의 감독 하에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.
- 1. 홈페이지 운영자는 학술정보처에서 매학기 제공하는 웹 빌더 및 CMS 솔루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 홈페이지 관리에 필요한 기술을 획득한다.
- 2. 홈페이지 운영자는 기관의 활동 내역, 기관 소식 등을 기관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게시한다.
- 3. 홈페이지 운영자는 메인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내용 중 기관의 사용자와 관련된 사항을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.
- 4. 홈페이지 운영자는 필요시에 홈페이지를 개편한다.
- 5. 홈페이지 운영자는 홈페이지 게시판 관리 지침(지침 1-4)과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지킬 의무가 있다.

# 기관 홈페이지 관리 지침(1-2)

- ⑤ 기관 홈페이지의 운영이 관리 지침에 위배되는 경우 학술정보처는 해당 홈페이지에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다.
- ⑥ 학술정보처는 기관 홈페이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화추진 위원회와 협력하여 기관 홈페이지를 평가하고 평가 보고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 각 기관에 효율적인 운영을 권 고할 수 있다.

## 부 칙

(시행일) 이 지침은 2012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지침(제2조, 제3조)은 2016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.